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전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영규  
전화 063-259-4308 / 팩스 0502-193-8088

## 보도자료

2024. 11. 18.(월)

### 제목

**미성년자를 가입시켜 조직의 재기를 노린  
조직폭력사범 등 집중 기소(1달간 30명)  
- 2024. 6. 18. 「시민 피해 조직폭력사범 집중 기소」 후속 -**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●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(부장검사 한연규)는 1달간(24. 10. 25.~11. 13.) 전주지역에서 ① 미성년자 가입을 통해 조직의 재기를 노린 ○○○파의 신규 조직원 10명(미성년자 조직원 9명), ② 서울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선배 조직원(일명 ‘서울 □□□파’)의 접견 심부름을 다니며 조직의 결속을 다진 □□□파 신규 조직원 7명 등 관내 조직폭력배 30명을 집중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음

● 전주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수사개시, 영장 단계에서부터 전담 검사의 사경과의 신속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, 공판단계에서는 중형 구형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

※ 전주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'23. 1.경 「조직범죄 대응 협의체」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음

## 1

### 조직폭력 사범 집중 기소 경위

● 전주 관내 주요 6개 폭력조직 중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일명 ○○○파, □□□파, △△△파 조직원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폭행을 행사하거나 조직간 다툼을 벌이는 등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음

- 폭력단체 조직원의 사기 사건에서 확인된 수사 단서를 시작으로, 전북 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전담 검사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미성년자 9명을 포함한 ○○○파 신규 조직원 10명, □□□파 신규 조직원 7명, △△△파 신규 조직원 2명, 특별한 이유 없이 민간인을 폭행한 □□□파 조직원 2명 등 1달 동안('24. 10. 25.~11. 13.) 폭력단체 조직원 30명을 불구속 기소 하였음

※ [별첨] 조직폭력사범 주요 기소 내역 참조

## 2

### 조직폭력사범 주요 기소 사례

#### ① 미성년자 가입을 통해 조직의 재기를 노린 ○○○파 사건

-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○○○파 조직원의 물품 사기,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중 ○○○파가 미성년자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활동하는 정황을 포착하고,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폭력단체 가입사건 수사에 착수한 후 전담 검사와 영장 신청 전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관내 조직폭력배들의 조직 확대에 대해 수사
- 가입사실을 부인하는 10대 조직원들도 송치 후 검찰에서 메시지 및 추가 확보한 행사 사진 제시 등 추궁 끝에 가입사실 자백하여, 미성년자 9명을 포함한 10명의 조직원 모두 불구속 기소(전부 자백)
- 관내 조직들은 최근 다수 조폭들이 검거되어 기소되자 ▲ 미성년자가 포함된 어린 연령대 조직원 영입을 시도하고 ▲ 기소된 조직원들의 형사 사건의 공판을 참관하며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체포된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전파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왔음

## ② 전주 □□□파, 서울 □□□파를 규합하려 한 □□□파 사건

-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감된 □□□파의 조직원들이 서울 지역에서 세를 불리고 있는 정황을 포착, 수감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수사
- ▲ 신규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명 서울 □□□파 선배들과 서신 및 접견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, ▲ 현재까지도 야유회('24. 7.)를 진행하는 등 조직활동이 계속되는 사실 확인하고 7명의 신규 조직원을 불구속 기소

## ③ 조직원들을 대동한 상해 사건


- ◇◇◇파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들을 대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,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수사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상해사실 등 확인하여 불구속 기소

##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시민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사건

- ○○○파 조직원 2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, 길거리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다가 폭행한 사건에서, 이들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으로 불구속 기소

## 3

### 향후 계획

- 전주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하여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개시, 영장 단계에서부터 전담 검사의 신속 협의, 중형 구형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,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

[별첨] 조직폭력사범 주요 기소 내역

폭력단체	범죄단체가입	비고
○○○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23. 5.경~'24. 5.경 ○○○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<b>[폭처법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]</b></li> <li>※ 가입 당시 기준 16세 2명, 17세 5명, 18세 2명, 19세 1명</li> <li>· 또래 3명에게 ○○○파의 가입을 권유하여 <b>[폭처법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]</b></li> </ul>	▶'24. 10. 30. ~'24. 11. 13. 10명 불구속기소
□□□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9.경~'24.경 □□□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<b>[폭처법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]</b></li> </ul>	▶'24. 10. 30. ~'24. 11. 8. 7명 불구속기소
△△△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20.경~'22.경 △△△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<b>[폭처법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]</b></li> </ul>	▶'24. 11. 8. 2명 불구속기소

폭력단체	범죄단체 조직원의 폭력 사건	비고
◇◇◇파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범죄단체 조직원이 '23. 11. 12. 후배 조직원들을 대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<b>[상해]</b></li> </ul>	▶'24. 10. 25. 1명 불구속기소
□□□파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범죄단체 조직원이 '23. 12. 20. 술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시민을 때려 <b>[폭행]</b></li> <li>· 범죄단체 조직원이 '24. 4. 7. 술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시민에게 시비를 걸며 때려 <b>[폭처법위반(폭행)]</b></li> </ul>	▶'24. 10. 29. 2명 불구속기소
○○○파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범죄단체 조직원이 '24. 3. 30.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시비를 걸며 때려 <b>[폭처법위반(공동폭행)]</b></li> </ul>	▶'24. 10. 30. 2명 불구속기소
□□□파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범죄단체 조직원이 '24. 4. 28.경 술집에서 자신의 지인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되자 이에 합세하여 시민을 때려 <b>[폭처법위반(공동폭행)]</b></li> <li>· 범죄단체 조직원 2명이 '24. 4. 30. 자신의 여자친구와 과거에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때려 <b>[폭처법위반(공동상해)]</b></li> </ul>	▶'24. 11. 8. 3명 불구속기소 (1명 별건구속 중)
□□□파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범죄단체 조직원이 '24. 1. 15.경 우연히 만난 학창 시절 선배인 시민을 특별한 이유없이 때려 <b>[폭행]</b></li> <li>· 범죄단체 조직원 2명이 '24. 3. 29.경 □□□파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동폭행 <b>[폭처법위반(공동폭행)]</b></li> </ul>	▶'24. 11. 8. 3명 불구속기소